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7. 10. 24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0월 13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0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사회건설위원회(2017. 10. 23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복지정책과장 김정수)

가. 제안이유

-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의 관련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상위법령 근거조항 정비
(안 제1조)
-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범위의 확대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권대광)

-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범위를 확대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.
- 주요 개정 내용으로
 - 안 제1조에서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 조항을 “시행령 제14조”에서 “시행령 제3조”로 변경하였고
 - 안 제10조제4항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관련하여 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에서 위탁대상을 사회복지법인, 공익법인, 비영리단체,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 개정한 사항을 상위법에 명시하고 있어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각 호를 삭제함.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76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10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의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적절한 가정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상위법령 근거조항 정비(안 제1조)
- 나.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운영 범위의 확대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건강가정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, 인권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7.8.17. ~ 9.6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”를 “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”로 한다.

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”를 “「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」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10조(운영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</u>에서 선정한다.</p> <p>1. <u>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</u></p> <p>2. <u>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</u></p> <p>⑤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<u>제3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0조(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<u>「건강가정기본법시행규칙」 제6조</u> 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</u>-----.</p> <p>〈삭 제〉</p> <p>〈삭 제〉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